○ 양 천 구　　의 회
○ 제298회　　임시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02. 16.

복지건설위원회

의 안 검 토 보 고

의안번호	제2834호	검토	전문위원 신훈
의안명	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		
발의자	옥동준, 오해정 의원외 5명	발의일자	2023. 02. 02.
소관위원회	복지건설위원회	회부일자	2023. 02. 03.

1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(2022. 3. 25.)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7조)

나.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(안 제8조~제11조)

다.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안 제12조~제17조)

라. 온실가스 감축 시책(안 제18조~제25조)

마. 기후위기 적응 시책(안 제26조~제27조)

바.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(안 제28조~제33조)

3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

-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녹색환경과 검토 완료

라. 기타

1) 제정안 : 별 첨

2) 조례안 예고 : 2023. 2. 3. ~ 2023. 2. 9.

4 검토의견

□ **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**

○ [1]지구 온난화로 폭염, 폭설, 태풍,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,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.4℃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.

○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‘파리협정’을 2015년 채택하였고, EU, 미국, 영국,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

1)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순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 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.

○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,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.

○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을 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제정되고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“법”)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양천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탄소중립 양천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□ 조문별 검토

○ 본 조례안은 총칙 총 6장과 33개의 본칙 조문 및 4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○ **제 1장 총칙의 조문은**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3조는 양천구 차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 안제6조는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

행을 위한 구청장,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○ **제 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조문을 살펴보면**

- 안 제8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, 양천구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)에 포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는 법에 의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토록 하였으며,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, 홈페이지 공포 및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**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조문은**

- 안 제12조는 법에 따라 구성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, 양천구의회 의원,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음.
-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기능,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 등의 사항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**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조문은**

- 안 제18조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20조에서 제25조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위하여 신·재생에너지 전환, 녹색건축물의 활성화, 녹색교통의 활성화, 탄소흡수원 등 확대,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등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규정하고, 법에 의하여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작성토록 규정 함.

○ **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조문은**

- 안 제26조에서 안 제27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**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조문은**

- 안 제30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32조에서 안 제33조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 및 필요성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함.

□ 종합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기존의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」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계법령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,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.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,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,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,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(탄소중립시·도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(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탄소중립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.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

제6조(탄소중립시·도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(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탄소중립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지역주민,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
2. 탄소중립시·도계획(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)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

④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시·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·도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·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·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탄소중립시·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·제공 등의 지원
2. 탄소중립시·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
3. 탄소중립시·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·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·도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